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서초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20호)]



2026.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호		
의안명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출자	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	제출연월일	2026. 8. 14.
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민희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우리사회 노인인구 비중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 증가, 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치매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됨
- 따라서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함
- 이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무가 6년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제20조(위임과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의 위탁)

○ 필요성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사업, 예방등록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나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며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지역자원,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전문성과 안정성 및 치매 환자 및 가족 관리와 돌봄을 위한 상시·지속성을 요구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치매예방과 인식개선(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
- 치매등록관리(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 치매가족지원사업(상담,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정망협의체, 자원봉사 운영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치매관리사업

라. 위탁시설개요

- 시설명 : 서초구치매안심센터
- 소재지 : 서초구 방배중앙로118 서초시니어플라자 3층(방배)
서초구 염곡말길 9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 (내곡)
- 수탁기관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개관일 : 2008.09.01.(방배 : 2025.12.01.)
- 규모 : 456㎡(방배). 801.12㎡(내곡)
- 시설현황 : 검진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가족카페, 안심하우스 등
- 이용현황 : 월 2,000명(연간 24,000명)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 2024.01.01 ~ 2026.12.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서울특별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소요예산	1,774,974	1,908,612	2,221,980

- 산출근거

- 인건비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준용
- 운영비 : 프로그램사업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아.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26년 제4차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등 심의한 결과, 적정 의결로 심의 가결되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제20조(위임과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나. 현 위탁 현황

연 번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계약기간	비 고
1	최초위탁	2008.09.01~2009.12.31	서울성모병원	1년 4개월	공개모집
2	재계약	2010.01.01~2012.12.31	서울성모병원	3년	
3	위탁	2013.01.01~2013.12.31	서울성모병원	1년	공개모집
4	재계약	2014.01.01~2016.12.31	서울성모병원	3년	
5	위탁	2017.01.01~2018.12.31	서울성모병원	2년	공개모집
6	재계약	2019.01.01 ~ 2021.12.31	서울성모병원	3년	
7	재위탁	2022.01.01~2023.12.31	서울성모병원	2년	공개모집
8	재계약	2024.01.01 ~ 2026.12.31	서울성모병원	3년	

다. 향후계획

- 2026. 9.~10.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접수
- 2026. 10. :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개최
- 2026. 12. : 위·수탁 협약 체결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시설현황 및 위치도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수탁기관	개관일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방배	방배중앙로 118 서초시니어플라자 3층	456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25.12.1.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내곡	염곡말길 9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	801.12		2008.9.1. ¹⁾

1)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개소, 2016.12.16. 내곡 이전

○ 시설현황 : 검진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가족카페 등
- 방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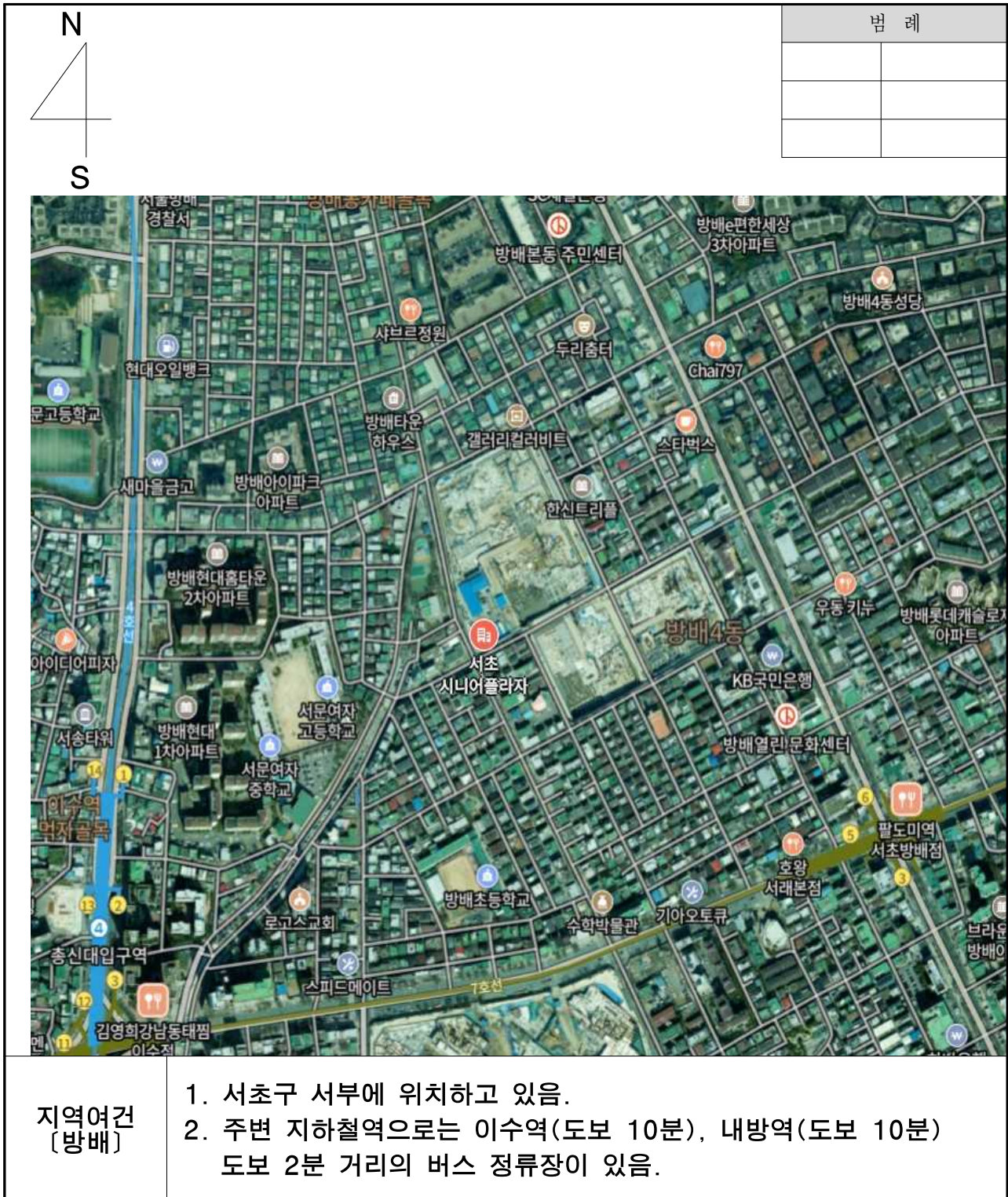
방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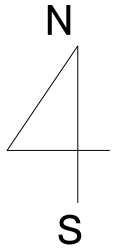
- 내곡센터

내곡센터



시설 위치도
(S=1:10,000)





범례	



지역여건 (내국)

1. 서초구 남단에 위치하고 있음.
2. 주변 지하철역으로는 양재시민의숲역(도보 30분),
도보 5분 거리의 버스 정류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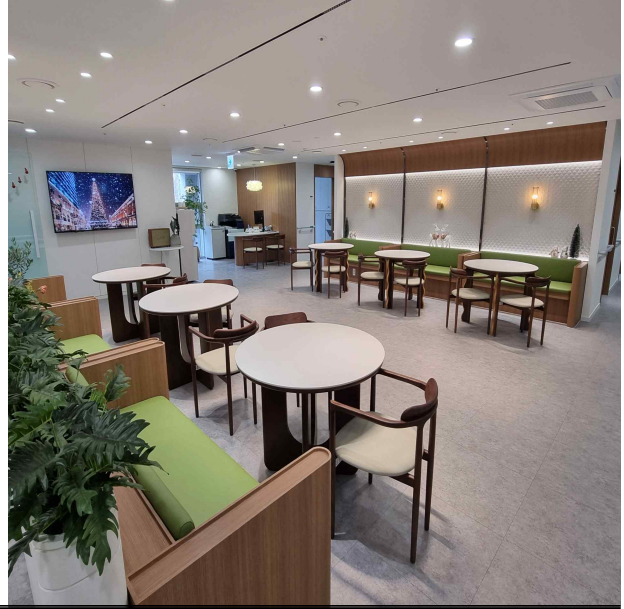
붙임

현장사진

[서초구치매센터 방배]



외부전경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AI프로그램실

[서초구치매센터 내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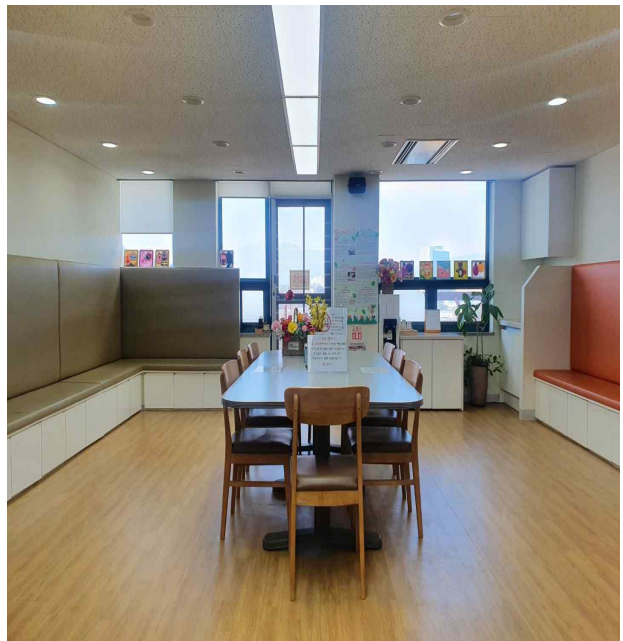
외부전경



검진실 로비



치매안심하우스



인지카페

참고1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안 건 명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운영〔재위탁〕			
부서명 (주관부서)	건강관리과	부서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8008)	
		팀 장	마음건강팀장 박은미(8080)	
		담당자	마음건강팀 김정은(8081)	
시설개요	소 재 지	〔방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18, 서초시니어플라자 3층 〔내곡〕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말길9,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		
	시설규모	〔방배〕 456㎡ 〔내곡〕 801.12㎡		
	시설용도	공공업무시설		
민간위탁 예정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치매 예방, 조기진단 및 관리,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초구 치매환자와 가족, 서 초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 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 ○ 위탁사무 내용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선별검진, 정밀검진 등) - 치매예방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상담, 사례관리 등)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일자 : 2026. 7. 31.(금) ○ 심의위원 : 총 10명 중 8명 참석 - 적정 의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6년 8월 4일				
서초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대우/02-2155-6396)				
건강관리과장 귀하				

참고2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②이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배경

- 관내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이에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08. 9.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최초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재위탁·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 1. 1.부터 2026. 12. 31.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서울성모병원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임.
- 금번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8. 10. 4. 서초구의회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관계 법령 등 법적 검토

-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은 자치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는 구청장의 권한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은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생각전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과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및 가족 지원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의료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이 요구되므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구청장은 ①~④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제3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1)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같음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초구치매안심센터는 2018. 10. 4. 제281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19. 1. 1.~2021. 12. 31. 3년간 서울성모병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2. 1. 1.~2023. 12. 31. 2년간 재위탁, 2024. 1. 1.~2026. 12. 31.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모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한 것임. 그러나 새로운 재위탁 계약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기간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의 재위탁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나아가 제출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제출되었고, 같은 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본예산의 편성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사업 위탁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인구수는 163,212명으로, 치매유병률은 8.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 2024. 12.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비롯하여 치매의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기에 위험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관내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인지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 및 증상에 따라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관련 인지재활 및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지기능의 유지를 통해 치매 이환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치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증상을 개선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며, 치매환자에게는 맞춤형 사례관리,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잔존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나아가 치매환자 가족 지지 프로그램 제공 및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으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르신의 치매 예방부터 조기 관리, 환자 및 가족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의 관리와 돌봄을 위한 사업은 풍부한 경험과 의료 전문성이 필수적이므로 전담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임. 또한 다양한 경험과 운영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치매환자의 치료·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향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²⁾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② 재정적인 부담능력, ③ 책임능력 및 공신력, ④ 위탁사무

2)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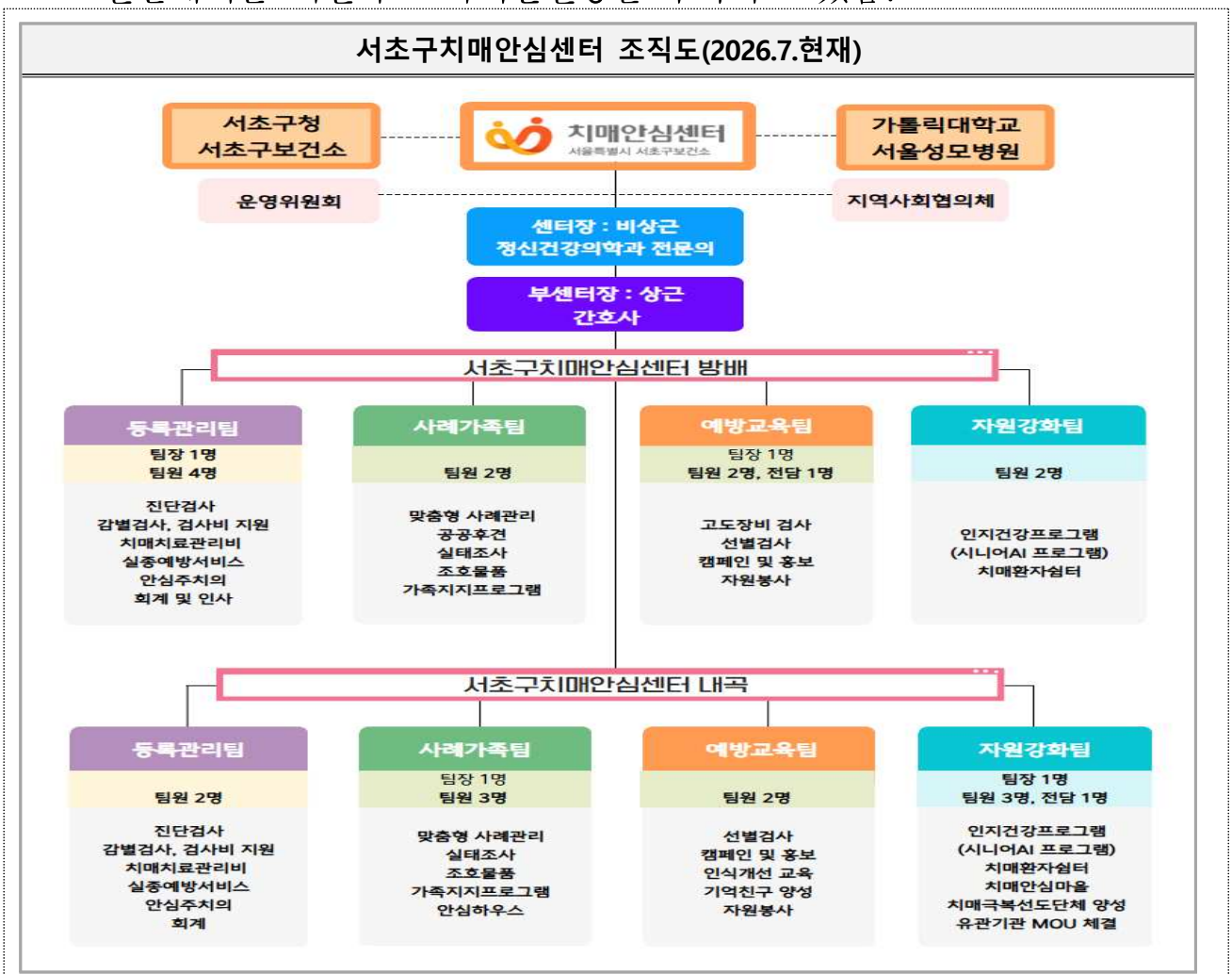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공백이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재계약(2024. 1. 1.~ 2026. 12. 31.)수탁기관 관리·운영 현황

◆ 기관 현황

- 2026. 7. 기준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은 총 26명이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지역사회협의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지검사 및 지문등록 등을 시행함으로써 치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직종별	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인원	26명	1명(센터장)	10명(부센터장 포함)	8명	7명

- 운영위원 : 총 5명
- 지역사회협의체(자문위원회) : 총 10명

◆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예산구분	2026년(6월말 기준)		2025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44.5%	예산액	집행액97.7%	예산액	집행액99.0%
합 계	2,221,980	990,698	1,908,612	1,864,608	1,774,974	1,757,747
치매관리운영비 (국50:시25:구25)	1,826,340	792,952	1,371,056	1,349,942	1,521,024	1,511,105
치매예방사업 시비보조금 (시50:구50)	-	-	40,000	40,000	-	-
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 (국50:시25:구25)	8,000	2,440	7,200	7,200	2,960	2,96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³⁾ (시65:구35)	38,400	14,605	48,000	25,110	30,000	23,603
종사자 정액급식비 (시50:구50)	30,000	15,097	25,200	25,200	25,200	24,289
치매예방 스마트케어 공모사업(시100)	-	-	-	-	10,000	10,000
치매예방관리비 (구100)	124,040	61,341	113,859	113,859	115,790	115,790
고도화장비기반 치매조기검진 사업비(구100)	59,000	26,698	70,000	70,000	70,000	70,000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 및 운영(구100)	-	-	233,297	233,297	-	-
AI인지건강프로그램 ⁴⁾ (구100)	44,000	44,000	-	-	-	-
방배센터 운영비 (구100)	92,200	33,565				

- 2024. 1. 1.~ 2026. 12. 31. 재계약 중인 민간위탁사업비의 세부 집행내역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집행율이 매우 높으며, 고도화장비기반 치매조기검진 사업, AI인지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운영 실적

-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의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음.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 치매 조기검진 사업 (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비 지원 등) • 치매환자의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환자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 • 치매관련 인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 치매환자의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 수탁기관은 위의 업무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을 위한 지표와 치매관련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지표로 구분하여 매년 세부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달성률을 평가하고 있는데, 전년도 성과목표의 추진결과와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설정하여 이를 다음연도 성과 지표에 반영하고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민간위탁 운영기관 연도별 목표대비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영역	성과지표	2024년		2025년		2026.7.기준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I. 전문화 된 치매 관리와 돌봄	선별검사 시행(건)	7,200	8,116	7,200	7,702	7,200	3,910
	진단검사 1단계 시행(건)	600	663	700	724	700	498
	진단검사 2단계 시행(건)	600	626	700	724	700	470
	감별검사(명)	60	60	60	73	60	32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등록(명)	350	388	400	512	400	383
	치매 대상자 등록(명)	200	210	220	223	220	109
	인지건강프로그램 참여(연인원)(명)	6000	6010			6000	3,738
	고도장비 [뇌 산소포화도 검사] 기반 검사(건)	1,000	1,038	1,000	1,044	1,000	561
	감별검사비(명)	25	30	25	20	25	16
	치매환자쉼터 운영(연인원)(명)	2,300	2,318	2,300	2,477	2,300	1,647
	안심하우스 이용자수(연인원)(명)	2,900	3,140	2,900	2,959	2,900	2,003
	치매극복선도단체(개)	4	4	3	3	3	5
II. 치매 관련 정책 기반 강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건)	700	596	600	662	600	396
	조호물품 지원(건)	750	1,344	1,000	1,033	1,000	730
	치매환자 가족 지지프로그램(건)	160	160	125	129	125	55
	맞춤형 치매사례관리(명)	300	308	400	403	400	298
	운영위원회, 지역사회협의체, 치매안전망 협의체 회의 운영(건)	8	8	10	12	10	7
	치매관련 유관기관 MOU 체결(건)	25	24	22	23	15	15
	의료기관 수(개)	3	2	1	2	2	2
	의료기관 연계(건)	60	63	60	62	60	49
	치매환자 실태조사 유효 응답자 수	2,284	2,327	950	957	635	427
	치매관리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회)	160	167	160	194	160	107
	치매예방교육 운영(명)	2,000	2136	2,000	2,113	2,000	1,428

	기억친구(리더) 양성인원(명)	900	1,064	1,100	1,135	1,100	688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명)	120	112	110	125	320	228
	치매안심마을 협약기관 수(개)	-	-	10	12	10	6
	치매공공후견(명)	-	-	3	3	3	3
	실종예방서비스(건)	-	-	200	277	200	163

- 나아가 주요 세부 사업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전체 선별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정상군, 인지저하군, 경도인지장애군의 재검진율이 증가하였고, 고도장비(뇌 산소포화도 검사) 기반 인지선별 검사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휴식 공간과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초쿨링센터의 달성도가 높았음. 또한 2026년 새롭게 시행하는 액티브 시니어 AI 브레인 인지 프로그램은 AI 기반 장비 도입 및 ICT 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참여자의 인지·신체 기능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6. 7. 기준 963명(달성도 56.6%)이 체험에 참여하여 높은 관심도를 보였음.

<주요 세부사업별 운영실적>

◎ 치매조기검진사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횟수(건)	인원(명)	횟수(건)	인원(명)	횟수(건)	인원(명)
선별검사		8,116	-	7,702	-	3,910	-
진단검사	진단검사1단계	663	-	767	-	498	-
	진단검사2단계	626	-	724	-	470	-
	계	1,289	-	1,491	-	968	-
감별검사		-	60	-	73	-	32
경도인지장애군 등록		-	388	-	512	-	383
치매군 등록		-	210	-	223	-	109

◎ 고도장비 기반 뇌산소포화도 검사 (특화)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목표 (건)	횟수 (건)	달성도 (%)	목표 (건)	횟수 (건)	달성도 (%)	목표 (건)	횟수 (건)	달성도 (%)
뇌 산소포화도 검사건수	-	1,038	-	1,000	1,044	104.4	1,000	561	56.1
ICT 프로그램 체험 건수	-	-	-	1,000	1,044	104.4	1,000	561	56.1
선별검사 연계 건수	-	985	-	900	1,010	112.2	900	515	57.2
신규 안시스 등록 건수	-	-	-	300	422	140.7	300	175	58.3

◎ 서초쿨링센터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무더위 쉼터 이용자 수(명)	300	441	147%	340	439	129%	250	270	108%
Cool 희망다이어리 ver 2.0 참여자 수(명)	40	49	123%	30	53	177%	24	24	100%
Cooling-Healing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60	93	155%	30	47	157%	24	30	125%
합계	400	583	145.8	400	539	135%	298	324	109%

◎ 치매환자 쉼터 운영

구분	2024년 사업실적			2025년 사업실적			2026년 7월		
	목표(명)	인원(명)	달성도(%)	목표(명)	인원(명)	달성도(%)	목표(명)	인원(명)	달성도(%)
내곡기억키움학교	1,600	1,512	94.5	1600	1679	104.9	1,300	851	65.5
서초기억키움학교	700	727	115.1	700	741	114	-	-	-
방배기억키움학교		79			57			1000	796
합 계	2300	2,318	100.8	2,300	2,477	107.7	2,300	1,647	71.6
실인원(명)	56			60			59		

◎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주요내용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횟수(건)	인원(명)	횟수(건)	인원(명)	횟수(건)	인원(명)	횟수(건)	인원(명)
교육	지역주민	30	2000	36	1,765	24	1721	50	1,377
	시설종사자			10	193	5	277	0	0

	치매환자가족			29	178	4	115	8	51
	계			75	2,136	33	2,113	58	1,428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160	3000	167	3,966	194	5,328	107	2,637

- 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202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안전 서초 커뮤니티 뇌벨업!(level up!)]되어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치매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매관리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치매안심마을(특화)>

○ 2024년 치매안심마을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 선정 '안전 서초 커뮤니티 뇌벨업!(level up!)'

세 부 사 업 명	목표	실적	달성률(%)
참여형 실종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 실시	200명	200명	100
브레인낭독 살롱(경로당)	3개소	3개소	100
브레인낭독 살롱(연인원)	180명	198명	110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SMCQ) 모형 판 배부	50개소	50개소	100

○ 2025년 치매안심마을 - 지역사회 안심유타리 '서초형치매안심마을'

사업명	실적
치매안심경로당 시범운영(4개소)	32회/367명
찾아가는 치매돌봄서비스	8회/96명
치매안심마을을 알려줘	5회/150명
치매안심길 포토 인증 이벤트	2건/200명 [1차] 양재1동, 방배2동: 치매예방게시판 체험 98명 [2차] 내곡동, 서초3동: SMCQ 모형 판 체험 102명
실종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	2건/700명 [1차] 서초3동, 450명, 모의훈련 신고 9건 [2차] 내곡동, 250명, 치매상황 역할극 10건
고정형 기억다방	34회
안심마을 협약기관 강화	40개소/40명
찾아가는 건강안심약방	4회/35명

○ 2026년 치매안심마을

▶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황

안심마을 명	운영 상태	설치일	우수일	비고
내곡동	우수	2019. 1. 1.	2025. 3. 20.	2026. 3. 23. 우수 유지 인증 완료
양재1동	우수	2020. 1. 1.	2025. 3. 20.	
방배2동	우수	2023. 7. 3.	2025. 7. 9.	2026. 7.13 우수 유지 인증 완료
서초3동	설치	2025. 4. 1.	2026. 4. 8.	신규 우수 지정 완료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동별 현황

구분	내곡동	양재1동	방배2동	서초3동	기타
치매극복선도단체	4개소	7개소	5개소	2개소	16개소
치매안심가맹점	1개소	0개소	1개소	1개소	7개소
총 44개소 중 안심마을 소재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21개소					

◆ 언론보도사항 및 대외수상 실적

- 서초구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언론보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104건, 2025년 126건, 2026년 7월 기준 33건이 보도되었고, 주제별로는 치매예방 등록·관리에 관한 보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지역사회 민·관 협력강화가 각 63건, 치매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이 61건 보도되었음.
- 아울러 치매관리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기관 표창 및 수상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됨.

<지난 3년간 대외수상 실적>

- 2024년 치매안심센터특화사업(서초 Cooling Center) 경진대회 대상 (서울시광역시치매센터장상)
- 2025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단체부문 서울특별시장 표창
- 2025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식개선사업(권역캠페인) 부문 최우수상 (서울시광역시치매센터장상)
- 2025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록-사례관리 사업부문(서초 안심-업up타운) 우수상 (서울시광역시치매센터장상)
- 2025년 치매인식개선 100초 영상 공모전[100만큼 기억해, 100만큼 사랑해] 대상

- 2025년 사회복지협의회 우수협약기관 표창(근로자 역량강화 기여)
- 2026년 인지장애 대상자 및 가족의 일상 누림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장려상

◆ 감사·감독상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³⁾ 및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⁴⁾에 따라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초구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서초구청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 1명과 담당부서 직원 2명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2024.6.28.	○ 뇌 산소포화도 측정 중간평가, 결과평가 운영위원회 보고 권고	○ 서초구치매안심센터-463(2024. 3. 4.) "2023년 고도장비(뇌 산소포화도검사)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 타 기관의 사례 및 서울시 등 유권해석에 따라 물품의 유형 및 건당 금액에 대한 개선 권고	○ 서초구 재무과-272(2024. 1. 8.) "2024년 일상경비 집행기준 및 운영계획 알림"과 관련하여 연간 계약 총액 330만원 초과 시 동일업체 연4회 이상 수의 계약 금지,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사무용품, 다과비 등 적용 제외)
2024.12.18.	○ 보조금포털(이나라도움)에 원천징수 신고 내역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권고	○ 권고사항에 의거 2025년부터 보조금 포털(이나라도움)에 원천징수 신고내역 시스템에 첨부
2025.6.9.	○ '2025년 서울특별시 치매 관리 사업 안내서'의 내용으로는 각 회의 수당 지급 차등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권고사항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치매관리 사업 안내서 P.150 ② 주요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심사 및 자문, 회의참석비에

3)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수탁자는 조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4)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88: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및 성과점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로 내부방침을 수립 후 회의의 성격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의거하여 내부방침 마련함
2025.12.23.	○ 계약서류의 최종 검토 및 보완 - 계약서류의 최종 검토 및 보완 (계약서 작성, 하자보증 보험가입)을 통해 공사 과정의 서류 준비를 하도록 함	○ 서초구치매안심센터 방배센터(신축) 보수공사 관련 - 보수공사 계약서류를 재검토하여 계약사항 보완, 하자보수보증서 가입 (1천만원 이상 공사) 확인, 하자보증금 납부 각서(1천만원 이하 공사) 확인, 공사 서류 재정비함
2026.6.18.	○ 회계시스템 전용조서 등록 후 보건소 보고하도록 함 ○ 비품등재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을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함	○ 전용조서 등록 후 보건소 보고 완료 (건강관리과-11986) ○ 부가세액 미입력임을 확인 후 비품등재 금액 차이 없이 입력완료함

◆ 사건 · 사고 및 처리 결과

<지난 3년간 사건 · 사고 현황>		
구분	사건·사고 내용	처리 결과
2024년	- 동의하지 않은 신체(손등) 접촉 직장 내 성희롱 진정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14590(2024.7.24.) 직장 내 성희롱 인정	1. 행위자 즉각사과 2. 행위자에 대한 직장 내 교육 즉시 실시 3. 분리조치 시행 4. 유급휴가 부여 고용노동부-14590(2024.7.24.) : 필요 조치 완료하였기에 시정 지시 전 시정으로 사건 종결
2025년	해당사항 없음	-
2026년	해당사항 없음	-

- 2024년 치매안심센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1건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즉시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 시정 지시 전 시정으로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음.

◆ 자체 성과평가

-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소관부서의 주관으로 2026. 6. 17.~19.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하였음.
- 성과평가 심사표의 지표별 배점 기준 따라 심사하였으며, 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는 94점(탁월)임. 주요 평가의견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방배센터를 개관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AI브레인 전용공간 및 스마트기기 도입으로 서초형 선진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충족하였음. 아울러 통합돌봄의 취지에 맞게 지역자원과의 활발한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III

종합의견

- 서초구치매안심센터는 2008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최초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위탁·재계약을 반복하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6. 12. 31.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

- 이에 금번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8. 10. 4. 서초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기간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의 재위탁에 해당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치매관리법」 제17조는 자치구의 보건소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20조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은 민간이 축적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임.
- 따라서 해당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임.